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64
----------	------

2021년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문장길 의원 (찬성자 44명)
- 나. 제 안 일 : 2021년 2월 5일
- 다.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 라. 상 정 일 :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장길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의 실현과 가정 환경,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평등정신에 입각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의 제도권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체험으로 형성되는 인격의 성립 또한 넓은 의미의 교육으로 봐야 할 것임.

- 이에, 청소년들에게 제한적인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인 시설과 문화 시설 등을 체험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무료입장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잠재적인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2.16. ~ 2.23.)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체험을 지원하여 정서함양과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청소년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6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의 실현과 가정환경,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정신에 입각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의 제도권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체험으로 형성되는 인격의 성립 또한 넓은 의미의 교육으로 봐야 할 것임.
- 청소년들에게 제한적인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인 시설과 문화 시설 등을 체험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무료입장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잠재적인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본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체험 등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청소년 정책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감면시설, 대상, 기준, 근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나. 개정조례안의 세부검토

### 1) 감면시설

- 본 개정안의 감면시설은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강행하고 있어, 이용료와 감면은 공유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 본 개정안의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정의에 따라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은 문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주·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이나, 복합시설 등도 문화시설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중 문화시설의 포괄적 정의 내용

- 야외음악당 등 :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 종합시설 :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별표 1〕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아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기타시설 등)은 69개소(별첨문서 참조)이며, 청소년활동시설은 30개소 등(청소년복지시설 12개소, 기타청소년시설 13개소 제외)으로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문화시설의 범위를 최소화할 경우 본 개정안의 개정목적 실현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시설 범위의 명확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현황 〉

(단위:개소)

소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기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99	14	8	11	3	33	30

출처 : 문화본부 제공자료(문화본부 소관 문화시설 운영현황),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서울시 밖에 설치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 144조 제3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필요),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151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법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바,
-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서울시가 설치하거나 위임·위탁한 문화시설’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후략)

② ~ ④ (생략)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2) 감면대상인 청소년의 범위

- 본 개정안의 감면대상인 청소년의 연령 범위(인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보면,
  - 본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활동 진흥법」(19세 미만), 문화관련 법령(「공연법」 등, 청소년의 범위:18세 미만)은 각각 다르게 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9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규정(본 조례 제2조제1항)하고 있어,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문화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연령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 서울시 청소년 인구통계 〉

최종수정일 : 2020.02.26. (단위:명)

지역	서울시 총인구	9세-24세	0세-18세	학령인구
합계	9,729,107	1,535,840	1,370,602	1,340,213
서울시 인구 대비 비율	100%	15.8%	14.1%	13.8%

\* 통계 명 : 청소년인구

\* 작성목적 :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추세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지원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9세-24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로 청소년인구

\* 0세-18세 :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따른 청소년인구로 19세 미만인 인구로 구분

\* 학령인구 :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다닐 연령대인 만 6세~만 21세까지의 인구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청소년 연령관련 법령 상 기준 〉

관련법	용어	연령	관계부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생년으로 규정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활동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고교생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고교생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공연물 등급분류	18세 미만 고교생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법무부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법무부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법무부
공직선거법	선거권자	19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	18세 미만	다자조약, 제1072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아동	16세 미만	다자조약, 제2128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소년	19세 미만	경찰청

- 청소년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거나, 학교 (초·중·고·기술·특수·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 따라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조례의 인적 효력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들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특별한 관계(공공시설 이용자, 공물의 허가사용자 등)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의 인적 효력범위에 대한 예외적 적용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타시·도 거주 청소년,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의 연령범위와 함께 공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감면기준 규정

- 본 개정안은 이용료 감면의 기준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수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④ 법 제2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중략)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은 조례로 결정된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경비로 충당하거나, 증대된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규칙으로 이용료를 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칙 등으로 위임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위임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용료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징수(「공유재산법」제22조제1항)와 면제(「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공유재산법」제27조)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시행령(「공유재산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포괄하여 위임하고 있는바,

-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이용료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와 달리 이용료 감면은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어, 「공유재산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서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어, 조례에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다만, 「공유재산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소년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그 시행령과 함께 각각의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조례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선언적 측면과 각각의 문화시설을 규율(설치·운영·관리 등)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점, 대상기관, 감면대상, 감면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면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2).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64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1년 3월 5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함.

## 2. 주요내용

- 청소년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면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 중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수정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6조의2(청소년 문화 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6조의2(청소년 문화 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